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 제정 : 2012. 6. 29.
- 개정 : 2013. 10. 29.
- 개정 : 2018. 3. 1.
- 개정 : 2019. 11. 29.

제1조(명칭) 위원회는 수원과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학생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목적으로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2. 상담센터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3. 진로·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상담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교내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상담센터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임상담사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한다.

제8조(사무관리) 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학생상담센터에서 관리한다.

제9조(관계부서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

3-0-25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학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